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2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저출산 대응체계,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위한 조직정비와 주민밀착형
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(안 제3조)

- 인구증가시책 추진: 행정과 ⇒ 기획감사실

나.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신설함(안 제3조)

- 목재문화체험장 관리·운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·제3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5. 11.~5. 31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바목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사.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3조제2항제9호마목 중 “문화원사”를 “문화원사, 목재문화체험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(생 략)</p> <p>② 실장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기획감사실장 가.~바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행정과장 가.~마. (생 략)</p> <p><u>바.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~8. (생 략)</p> <p>9. 문화관광과장 가. ~ 라. (생 략) 마. 문화센터, 박물관, 무형문화재 전수관, <u>문화원사</u>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10.~13. (생 략)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----- 가.~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사.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가.~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<u>문화원사, 목재문화체험장</u>----- -----</p> <p>10.~13. (현행과 같음)</p>